



## 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(제7판)」 안내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('22.12.23. 발표)에 따라 개정된 「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**」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주요 개정사항

- **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)** 실내 전체 →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
-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**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**

- ① **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**  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**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**  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**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**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**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**

- **(기타 내용 정비)** 의무 조정사항 및 다빈도 질의 관련 FAQ 등 정비

\* FAQ 포함 방역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홈페이지) - 알림·자료 - 법령·지침·서식 - 코로나19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

### 2. 시행: 2023.1.30.(월) 0시부터 시행. 끝.

붙임 1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.
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 FAQ. 끝.

## 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사단법인 대한약사회

주무관 신승 보건사무관 김진명 일상방역관리팀장 전결 2023. 1. 30. **곽진**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1710 (2023. 1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9065 팩스번호 00-000-0000 / [clavicle@korea.kr](mailto:clavicle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